

#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8
------------	-----

제출년월일 : 1992. 6.

제출자 : 안산시장

## 1. 제안이유

통합공과금 실시계획에 따라, 현행 안산시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통합공과금 과정사업 운영에 적합토록 조문을 개정코자함.

## 2. 주요골자

### ○ 쓰레기 수수료 납기기한 변경(안 제3조)

-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로 하며, 통합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
-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징수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제5조

나. 예산 상황 : 통합공과금 과정사업과 연계하여 조치

다. 기타참고사항 : 내부부 조례개정준칙(안) 사본

# 안산시폐기물수집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폐기물수집수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쓰레기수수료 납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 운반업자 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

1.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로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 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쓰레기 수수료 납기) ① 쓰레기 수수료 납기는 <u>다음과</u> 같다. 다만, 다량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 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p>	<p>제3조(쓰레기 수수료 납기) ① 쓰레기 수수료 납기는 <u>다음 각호와</u> 같다. 다만, 다량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 운반 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별</th><th style="text-align: center;">부과대상기간</th><th style="text-align: center;">부과일자</th><th style="text-align: center;">납 기 일</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월 ~ 3월</td><td style="text-align: center;">3. 1</td><td style="text-align: center;">3.15~3.31</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td style="text-align: center;">4월 ~ 6월</td><td style="text-align: center;">6. 1</td><td style="text-align: center;">6.15~6.3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td style="text-align: center;">7월 ~ 9월</td><td style="text-align: center;">9. 1</td><td style="text-align: center;">9.15~9.3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td style="text-align: center;">10월~ 12월</td><td style="text-align: center;">12. 1</td><td style="text-align: center;">12.15 ~ 12.31</td></tr> </tbody> </table>	기별	부과대상기간	부과일자	납 기 일	1	1월 ~ 3월	3. 1	3.15~3.31	2	4월 ~ 6월	6. 1	6.15~6.30	3	7월 ~ 9월	9. 1	9.15~9.30	4	10월~ 12월	12. 1	12.15 ~ 12.31	<p>1.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u>10일, 20일, 말일로</u>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p> <p>2.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 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 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p>
기별	부과대상기간	부과일자	납 기 일																		
1	1월 ~ 3월	3. 1	3.15~3.31																		
2	4월 ~ 6월	6. 1	6.15~6.30																		
3	7월 ~ 9월	9. 1	9.15~9.30																		
4	10월~ 12월	12. 1	12.15 ~ 12.31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동일)

2-7

00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133)	<p>① 쓰레기 수수료 납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양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 시 그에 따른다.</p>			<p>① 쓰레기 수수료 납부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양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 시 그에 따른다.</p>
	기 별	부과대상 기 간	부 과 일 자	납 기 일
	1	1월 ~ 3월	3. 1.	3.15 ~ 3.31
	2	4월 ~ 6월	6. 1.	6.15 ~ 6.31
	3	7월 ~ 9월	9. 1.	9.15 ~ 9.31
	4	10월 ~ 12월	12. 1.	12.15 ~ 12.31
<p>② 제 1항의 납기 중간에 세로운 부과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으로 월 할한 금액을 징수 한다. 월 계산은 16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15일이 하인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 <p>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기를 월 별로 조정할 수 있다</p>			<p>② 좌 동</p> <p>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기를 월 별로 조정할 수 있다</p>	